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원경찰의 직급체계 신설 및 승진제도 도입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844호)

2022.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규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직급체계 신설 및 근속승진 제도 도입	2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변경	8
※ 참고자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의안번호 제2114844호)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의원 등 40인
2. 제안연월일 : 2022. 3. 2.
3. 회부연월일 : 2022.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직급체계를 신설하고, 직급체계 신설을 전제로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며, 청원경찰 보수 역시 신설된 청원경찰 직급체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려는 것임.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직급체계 신설 및 근속승진제도 도입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5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급 및 승진)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 <u>1. 청원감</u> <u>2. 청원위</u> <u>3. 청원사</u> <u>4. 청원장</u> <u>5. 청원경</u> <u>② 청원주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해당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각각 승진임용</u>

현행	개정안
	<u>한다. 다만, 청원주가 업무 실적이 우수한 청원경찰 등을 특별히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u> <u>1. 청원경을 청원장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9년 이상 근속자</u> <u>2. 청원장을 청원사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u> <u>3. 청원사를 청원위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7년 이상 근속자</u> <u>4.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u> <u>③ 청원주는 직급별·재직기간별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 <u>④ 청원주는 청원위를 청원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u> <u>⑤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승진임용의 기준·방법·절차·주기, 그 밖에 승진임용에</u>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생략)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생략)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조의3(청원경찰의 징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해임, 강등</u>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고,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국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이라 한다)은 재직기간에 따라 특정 경찰공무원 직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¹⁾.

나아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경찰 배치시설 내 지휘·감독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감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함.

<감독자 지정 관련 규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

1)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4]

감독자 지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근무인원	직급별 지정기준		
	대장	반장	조장
9명까지			1명
10명 이상 29명 이하		1명	2 ~ 3명
30명 이상 40명 이하		1명	3 ~ 4명
41명 이상 60명 이하	1명	2명	6명
61명 이상 120명 이하	1명	4명	12명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신설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청원경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개정안은 직급체계 신설을 전제로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일정한 재직기간이 도과하면 승진시키는 제도 도입 시 청원경찰의 사기진작 효과가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청원경찰의 직무가 그 종류·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다섯 가지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공무원법」상 정의된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함²⁾.

그런데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

2)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위, 청원감의 총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바,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라는 청원경찰의 직무가 그 종류·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다섯 가지 수준으로까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청원경찰 배치시설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은 총 1,350개인데, 근무인원이 1명인 시설이 319개로 전체 시설의 23.8%를 차지하며, 근무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이 1,105개로 전체 시설의 81.8%를 차지하는바, 대부분의 배치시설에서 청원경찰이 소규모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근무인원별로 직급을 구분하여 직무를 세분화하여 배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청원경찰 배치시설별 근무인원 현황>

구분	계	국가기관·지자체		국가기관·지자체 外	
계	1,674	1,350	누계	324	누계
0명	28(1.6%)	21(1.5%)	-	7(2.1%)	-
1명	354(22%)	319(23.8%)	340 (25.1%)	35(10.8%)	42 (12.9%)
2명	235(14%)	194(14.7%)	534 (39.5%)	41(12.6%)	83 (25.6%)
3명	205(12%)	185(13.7%)	719 (53.2%)	20(6.1%)	103 (12.9%)
4명	226(13.5%)	162(12%)	881 (65.2%)	64(19.7%)	167 (51.5%)
5명	76(4.5%)	50(3.7%)	931 (68.9%)	26(8%)	193 (59.5%)
6 ~10명	233(13.9%)	174(12.8%)	1,105 (81.8%)	59(18.7%)	252 (77.7%)
11 ~20명	165(9.8%)	129(9.5%)	1,234 (91.4%)	36(11.1%)	288 (88.8%)
21 ~30명	77(4.6%)	64(4.7%)	1,298 (96.1%)	13(4%)	301 (92.9%)
31 ~40명	31(1.8%)	21(1.5%)	1,319 (97.7%)	10(3%)	311 (95.9%)

구분	계	국가기관·지자체		국가기관·지자체 外	
41 ~50명	14(0.8%)	10(0.7%)	1,329 (98.4%)	4(1.2%)	315 (97.2%)
51 ~60명	10(0.5%)	9(0.6%)	1,338 (99.1%)	1(0.3%)	316 (97.5%)
61 ~70명	3(0.1%)	3(0.2%)	1,341 (99.3%)	0(0%)	316 (97.5%)
71 ~80명	4(0.2%)	3(0.2%)	1,344 (99.5%)	1(0.3%)	317 (97.8%)
80명 이상	13(0.7%)	6(0.4%)	1,350 (100%)	7(2.1%)	324 (100%)

※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 배치시설 총 1,350개 중 931개(68.9%) 시설에서 5명 이하 / 1,105개(81.8%)에서 10명 이하 / 1,234개(91.4%)에서 20명 이하 근무 중

다음으로, 전술한 대로 현행 규정상으로도 대규모 배치시설에서는 이미 대장-반장-조장 체계를 통해 근무인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직급체계 신설이 인력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다음으로, 개정안은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임용되도록 하는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정 재직기간이 도과하면 해당 청원경찰을 반드시 승진임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와 달리³⁾ 청원경찰에 대한 근속승진임용을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3) 「경찰공무원법」 제16조(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근속승진임용을 개정안과는 달리 재량행위로 변경하여 규정하고자 한다면, 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승진임용되지 못하는 청원경찰이 현행 제도에 비해 오히려 보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심사 시 감안하여야 함.

참고로, 경찰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직급체계를 도입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는 법률이 아닌 배치시설별 내부 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찰과 달리 소규모 인원으로 인사이동 없이 ‘경비’라는 단일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에 경찰과 유사한 직급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체계 변경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u>경찰공무원의 보수</u> 를 <u>감안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국가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령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수</u> 를 <u>적용하여</u> -----. 1. 청원경: 순경

현행	개정안
<u>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u> <u>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u> <u>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u> ③ (생략)	<u>2. 청원장: 경장</u> <u>3. 청원사: 경사</u> <u>4. 청원위: 경위</u> <u>5. 청원감: 경감</u>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보수를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은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 봉급을 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u>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u> <u>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u> <u>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u> <u>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u>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686,500	-	-	-
2	1,732,900	-	-	-
3	1,816,000	-	-	-
4	1,904,000	-	-	-
5	1,993,000	-	-	-
6	2,083,900	-	-	-
7	2,171,000	-	-	-
8	2,254,800	-	-	-
9	2,335,200	-	-	-
10	2,412,500	-	-	-
11	2,486,200	-	-	-
12	2,559,300	-	-	-
13	2,629,600	2,774,700	-	-
14	2,697,800	2,845,600	-	-
15	2,763,000	2,913,800	-	-
16	2,826,100	2,979,700	-	-
17	2,887,800	3,041,100	-	-
18	2,945,200	3,100,700	-	-
19	3,001,700	3,158,000	3,476,400	-
20	3,055,400	3,212,500	3,535,000	-
21	3,106,000	3,264,600	3,590,900	-
22	3,154,900	3,314,600	3,643,600	-
23	3,201,400	3,362,200	3,694,800	-
24	3,246,000	3,408,100	3,743,200	4,008,000
25	3,288,300	3,451,800	3,789,100	4,055,800
26	3,326,900	3,494,000	3,833,200	4,099,600
27	3,360,000	3,529,300	3,870,300	4,137,100
28	3,391,800	3,563,200	3,905,000	4,173,200
29	3,422,600	3,595,300	3,938,500	4,207,200
30	3,452,600	3,626,400	3,970,600	4,239,500
31	3,481,800	3,656,600	4,000,700	4,270,100

그런데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청원경찰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직접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①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을 결정하고 ② 해당 청원경찰 직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 산정시 감안하게 되는 경찰공무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음.

<재직기간별 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찰공무원 직급>

재직기간	현행	개정안	개정안에 따른 청원경찰 직급
9년 미만	순경	순경	청원경
9년 이상 15년 미만		경장	청원장
15년 이상 17년 미만	경장	경사	청원사
17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24년 미만	경사	경위	청원위
24년 이상 30년 미만		경감	청원감
30년 이상	경위		

청원경찰 직급체계 신설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직기간별 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찰공무원의 직급이 상향되어 총 보수지급액이 증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체계가 신설되고 보수체계가 변경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보수 및 기관부담금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총 710억 2,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⁴⁾.

4) 청원경찰법(의안번호 제2114844호)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은 참고자료 참조

- 나아가, 개정안은 업무 실적이 우수한 청원경찰 등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별승진제도가 적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 중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직급체계 신설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으로서, 직급체계 신설 없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현행 보수단계별 재직기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또한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의 문구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은 공무원 보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적용’한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 이를 ‘준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청원경찰의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경찰과 채용절차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경력에 따른 직무의 변동이 적어 경찰과 같은 직급 구별이 곤란하며, 현재도 보수를 경찰에 준하여 지급 중인 가운데 대장·반장·조장에 게 각 직책에 따른 감독자 직책수당도 지급중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불수용 의견임.

- 나아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과 그 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간 급여격차를 심화시킬 우려 역시 존재한다는 입장임.

I. 비용추계 결과

- 안 제5조의2 등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과 승진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153억 5,600만원, 2027년 140억 6,1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710억 2,500만원 (연평균 142억 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연평균
청원경찰 직급 및 승진 (제5조의2·제6조)	15,356	13,685	14,027	13,896	14,061	71,025	14,205

II. 재정수반요인

- 청원경찰 직급 및 승진(제5조의2·제6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보수산정 시 준용하는 경찰공무원 직급을 다음 표과 같이 규정

[표]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재직기간(년)	보수산정 직급	재직기간(년)	직급	보수산정 직급
15년 미만	순경	9년 미만	청원경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9년 이상 17년 미만	청원장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17년 이상 24년 미만	청원사	경사
30년 이상	경위	24년 이상 30년 미만	청원위	경위
		30년 이상	청원감	경감

Ⅲ.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 12월 말 기준 재직 중인 청원경찰 9,990명이 2023년 이후 추계기간 동안 중도 퇴직 없이 재직하며, 재직기간이 31년에 도달한 경우만 다음연도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
- 신규 채용자의 경우 추계기간 5년 동안 보수산정 시 순경 계급을 유지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봉급의 차이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 청원경찰은 3호봉으로 시작하여 재직기간 1년마다 1호봉씩 증가하며 직급이 상승하는 경우 1호봉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재직기간별 청원경찰 현황: 2021년 12월 기준

(단위: 년, 명)

재직기간	인원	재직기간	인원
0~1	760	16	205
1	676	17	210
2	726	18	175
3	946	19	129
4	331	20	98
5	281	21	102
6	375	22	85
7	264	23	119
8	272	24	186
9	226	25	194
10	201	26	282
11	205	27	266
12	279	28	283
13	273	29	352
14	285	30	287
15	248	31~	669
총계	9,990		

자료: 경찰청

□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0~2022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1.7%를 적용한 경찰공무원 봉급표를 활용

- 2022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와 경찰공무원 봉급표를 비교한 결과, 재직기간 15년 이상인 청원경찰의 봉급은 경찰공무원 봉급표의 98% 수준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보수, 기관부담금 증가분

- 대상자 수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보수, 기관부담금 차이를 곱하여 산출

<비용추계 산식>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 \sum_t (\text{대상자 수}_{i,t}^{1)}) \times \text{증가분}_{i,t}^{2)})$$

이때, t 는 추계연도(2023~2027년), i 는 재직기간별 청원경찰 인원

- 1) 대상자는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직급 차이가 발생하는 청원경찰을 말하며, 연도별 재직기간별로 대상자 수를 산출
- 2) 증가분은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직급, 호봉의 차이로 발생하는 보수, 기관부담금을 말하며, 추계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의 직급별 보수는 최근 3년(2020~2022년)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 1.7%를 적용하고 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공무원 보수의 98%로 가정

2. 청원경찰 직급 및 승진(제5조의2·제6조)

가. 2023년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급, 승진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153억 5,600만원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라 2023년 기준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직급 차이가 발생하는 대상자 수를 재직기간별로 산출하고, 재직기간별 현행법을 적용한 보수와 개정안에 따른 보수의 차이를 계산
 - 예시) 9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청원경찰은 현행에 따르면 순경 12호봉을 적용받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경장 11호봉을 적용받게 되는데, 그 차액은 월 63,868원이고, 대상 인원은 272명(2021년 12월 기준 8년 이상 9년 미만)

[표 18] 대상자 수와 보수 증가분: 2023년

(단위: 명, 원)

재직기간	현행법 직급 호봉	개정안 직급 호봉	대상자 수 (a)	보수월액 증가분 (b)	추가재정소요(보수) (=a×b×12)
9	순경12	경장11	272	63,868	208,463,846
10	순경13	경장12	226	70,885	192,239,849
11	순경14	경장13	201	76,987	185,692,403
12	순경15	경장14	205	82,784	203,648,148
13	순경16	경장15	279	87,869	294,184,742
14	순경17	경장16	273	91,937	301,184,957
15	경장17	경장17	285	0	0
16	경장18	경장18	248	0	0
17	경장19	경사18	205	256,996	632,209,914
18	경장20	경사19	210	264,013	665,313,264
19	경장21	경사20	175	270,522	568,096,200
20	경장22	경사21	129	276,522	428,056,520
21	경장23	경사22	98	281,607	331,170,185
22	경장24	경사23	102	286,692	350,911,375
23	경사24	경사24	85	0	0
24	경사25	경위25	119	267,064	381,367,678
25	경사26	경위25	186	266,657	595,179,317
26	경사27	경위26	194	266,861	621,251,942
27	경사28	경위27	282	268,386	908,219,239
28	경사29	경위28	266	268,895	858,312,202
29	경사30	경위29	283	269,200	914,202,860
30	경위30	경감29	352	298,388	1,260,390,067
31	경위31	경감30	287	301,134	1,037,104,463
32	경위32	경감31	669	331,745	2,663,252,071
합계					13,600,451,243

주: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라 직급 및 호봉에 차이가 발생하는 재직기간을 음영으로 표시

- 재직기간별 대상자 수, 보수 증가분, 12개월을 곱한 후 합하면 보수 부분의 추가재정소요는 136억원이고, 여기에 기관부담금 효율(2023년 기준 13.08%,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을 적용하면 기관부담금은 17억 5,600만원

나. 2024~2027년 추가재정소요

- 2023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보수와 기관부담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표 1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보수	12,089	12,391	12,276	12,421
기관부담금	1,596	1,636	1,620	1,640
합계	13,685	14,027	13,896	14,061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153억 5,600만원, 2027년 140억 6,100만원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710억 2,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2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3~2027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보수	13,600	12,089	12,391	12,276	12,421	62,777
기관부담금	1,756	1,596	1,636	1,620	1,640	8,248
합계	15,356	13,685	14,027	13,896	14,061	71,025

문 의 처

02)6788-5345